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안 제6조의7, 제17조, 제19조의18, 별표1의3)

신용카드 발급 기준,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금리인하 요구기준 등 상
신용등급 기준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7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로, “책정”을 “산정”으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일정 등급”을 “개인신용평점이 일정 수준”으로 한다.

제19조의18제1항제1호 중 “신용평가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선 또는 신용평가등급”을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2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를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목 2) 중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를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7,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② (생략)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③ ----- ----- -----.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u>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u> <u>책정한 것을 말한다</u>)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 <u>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u> -- <u>산정</u> --- -- <u>말한다. 이하 같다</u>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① (생략)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같은	② -----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1. ~ 5. (생략)

6. 대출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등급(「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책정한 것을 말한다)이 일정 등급 이하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대출 중 대출금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채권

③·④ (생략)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법 제50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1. ~ 5. (현행과 같음)

6. ----- 개인신용
평점이 일정 수준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 ① --

-----.

1. 개인이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u>신용평가등급</u>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무상태 <u>개선</u> 또는 <u>신용평가등급</u>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④ (생략)	1. ----- ----- ----- <u>개인신용평점</u> ----- ----- ----- 2. ----- ----- ----- -- <u>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연 락 처	(02) 2100 - 2625